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4.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광역시자치단체에 부여된 권한이 「지방이양일괄법」 개정(법률 제17007호, 2020.2.18. 일괄개정, 2021.1.1. 시행)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그 권한의 사항을 기초자치단체로 변경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동 제품 제조자가 환경청에 제출하는 어린이용품 조치계획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일부 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설의 개선명령 등(안 제11조제1항내지제4항)

시설의 개선명령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 시설 개선명령 대상에 키즈카페를 추가함

나. 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안 제11조의2)

어린이활동공간 확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기관, 증축 또는 수선 사실을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다. 확인검사 이행명령(안 제11조의3)

확인검사 이행을 명령하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명령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관, 확인검사 이행보고서를 통보받는 기관을 변경(시·도→시장·군수·구청장)하고자 함

라. 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안 제11조의9)

환경유해인자를 함유한 어린이용품을 시장에 판매한 제조사 등이 해당
용품을 회수하기 위해 행정청에 제출하는 조치계획서를 손쉽게 정확
하게 작성하기 위해 기재사항을 제시(양식 포함)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 및”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외한다)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 및”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중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비치하여야”를 “비치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축하는 경우로서”를 “신축·증축·수선한 경우로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시·도지사 및”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도지사 및”을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 및”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제11조의9를 제11조의10으로 하고, 제11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의 수락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용품 명칭, 제조·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어린이용품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 이행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조치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용품 명칭, 제조·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의 개정규정과 제11조의9의 신설규정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제15조 관련)

1.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한 시험·검사 (정밀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1. 도료나 마감재료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u>6가크로뮴</u>	44,200
2.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 방출	가.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 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시험 항목 전부 1) 폼알데하이드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3) 톨루엔	1,250,000
	나. 소형 체임버시스템 및 클린룸시스템 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폼알데하이드	124,000
	2)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톨루엔	139,000
3. 목재 방부제	다음 각 목의 시험항목 전부 가. 크레오소트유 1호 및 2호(A-1, A-2) 나. <u>크로뮴</u> ·구리·비소 화합물계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다. 크롬·플루오르화구리·아연 화합물계 (CCFZ) 라.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CCB)	160,000
4. 모래 등 토양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u>6가크로뮴</u>	44,200
	마. 비소	44,200
	<u>바. 기생충(란)</u>	39,300
5.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가. 납	44,200
	나. 카드뮴	44,200

	다. 수은	44,200
	라. <u>6가크로뮴</u>	44,200
	마. 폼알데하이드	45,000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	카생충(란)	39,3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2. 어린이활동공간과 관련한 시험·검사 (기본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1.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50,000
2.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00,0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3.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 2(환경안전관리기준)의 제 2호 가목, 제3호, 제5호 가목에 한해 적용한다.
4. 기본검사의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면적 또는 교실 수에 따라 수수료를 추가할 수 있다.

3. 어린이용품과 관련한 시험·검사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원)
어린이용품에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제한 또는 금지한 환경유해 인자	가.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i-n-octyl phthalate; DNOP, 000117-84-0)	90,000
	나.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isononyl phthalate; DINP, 028553-12-0)	90,000

다. 트라이뷰틸 주석(Tributyltin compounds, 688-73-3)	90,000
라. 노닐페놀(Nonylphenol, 025154-52-3)	90,000

비고

1. 수수료는 20%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2.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	-----	-----	------	-----------------

보고자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업종

개선 사항

개선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환경보건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현지 확인	➔	결재
--------	---	-------------	---	----	---	-------	---	----

보고자

처리기관 : 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어린이활동공간 담당부서)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어린이 활동공 간 소유 자 또는 관리자)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어린이활동공간 소재지)		
대리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사업장 소재지)		

검 사 신 청 내 용

어린이활동공간명	검사 대상	신축, 증축, 수선일자	검사 희망일자
[] 어린이놀이시설			
[] 보육실	[] 신축 연면적 m ²		
[] 교실	[] 증축, 연면적 m ²		
[] 학교도서관	[] 수선, 면적 m ²		
[] 기타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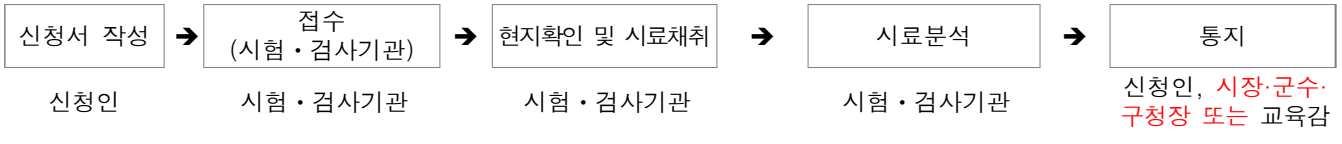
제출서류	1.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
------	-----------------------------	-------------------

		하는 수수료)
--	--	---------

유의사항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한 기관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또는 관리자)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 (대표자)		
	주소 (어린이활동공간 소재지)	(전화번호 , 전자우편)	
검사결과	검사구분	[] 기본검사,	[] 정밀검사
	적합여부	[] 적합,	[] 부적합
	세부 검사결과	뒤쪽 참조	
	조치 필요사항		
「환경보건법」 제2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 증명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장 직인			

세부 검사결과

1. 시설물의 외관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검사결과
	육안 검사	[] 적합 [] 부적합	

2. 도료나 마감재료

가. 중금속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중금속 검사결과(기준, mg/kg)				
			중금속의 합 (1,000mg/kg이하)	납 (600mg/kg이하)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 기본검사	[] 적합					
	[] 정밀검사	[] 부적합					

나. 실내오염물질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 대상)

검사지점	적합여부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 적합 [] 부적합	소형 체임버법 이용(mg/m ³ · h)	0.02 이하		2.5/4.0 이하 (페인트/벽지)	

* 목질판상제품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0.12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0.05 이하

** 접착제는 2.0이하, 실란트는 1.5이하, 퍼티는 20.0이하, 바닥제는 4.0이하, 목질판상제품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은 0.8 이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0.4 이하

3. 목재

가. 목재 방부제(기준 : 사용금지)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검사결과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합 [] 부적합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의 방부목재 분야 중 "결과의표기 방법"에 따라 표기

4. 토양

가. 중금속

검사지점	적합여부	카드뮴(mg/kg)		비소(mg/kg)		수은(mg/kg)		납(mg/kg)		6가크로뮴(mg/kg)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 적합 [] 부적합	4이하		25이하		4이하		2000이하		5이하	

나. 기생충(란)(기준 : 불검출)

검사지점	적합여부	검출 종류(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선충류	흡충류	원충류
	[] 적합 [] 부적합			

5. 합성고무재질 바닥재

가. 중금속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중금속 검사결과(기준, mg/kg)				
			중금속의 합 (1,000mg/kg이하)	납 (600mg/kg이하)	카드뮴	수은	6가크로 뮴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합 [] 부적합					

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검사지점	검사방법	적합여부	기준(mg/kg)	검사결과((mg/kg)
	[] 기본검사 [] 정밀검사	[] 적합 [] 부적합	75이하	

6. 실내공기질

검사지점	적합여부	시험방법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	검사결과	기준	검사결과
	[] 적합 [] 부적합	공기포집법($\mu\text{g}/\text{m}^3$)	80이하		400이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자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개선 사항				
개선 이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환경보건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확인검사명령을 이행 하였으므로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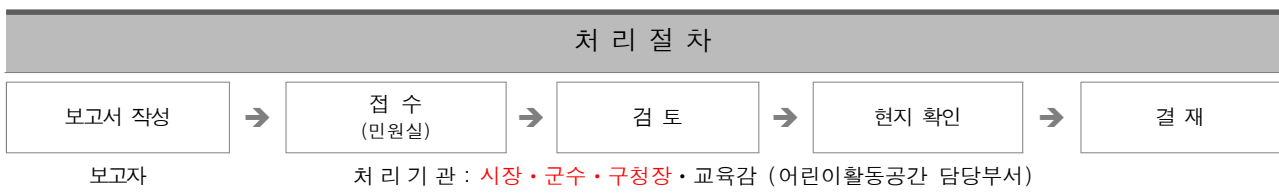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린이용품 회수 등의 조치(이행) 계획서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어린이 용품정보	용품명 (상표명)	모델명	
	제조수량 (수입수량)	제조기간 (수입기간)	
	판매수량	판매기간	
	거래업체명		
조치 계획량		조치 이행 예상기간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조치 이행방법			
소비자, 판매자 등에게 회수 등의 조치계획을 알리는 방법			

「환경보건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어린이용품 회수 등의 조치계획을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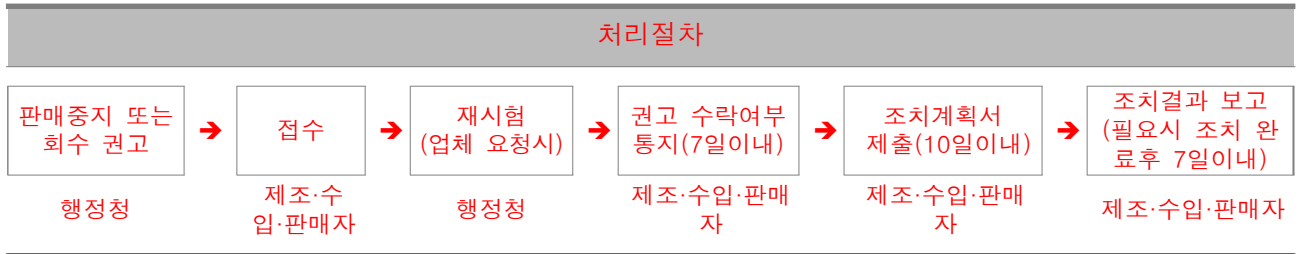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어린이용품 회수 등의 조치(이행) 결과보고서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보고자 (직급/성명)		전화번호/팩스번호	
	주소		전자우편	
어린이용품 정보	용품명 (상표명)		모델명	
	제조수량 (수입수량)		제조기간 (수입기간)	
	판매수량		판매기간	
	거래업체명			
회수 등의 권고이행 내용과 실적	조치량		미조치량	
회수 등을 하지 못한 용품에 대한 조치계획				
재발방지 대책				

「환경보건법」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9제2항에 따라 어린이용품 회수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조치량 등의 명세 등)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개선하거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 <u>하여야</u> 한다.	제11조(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u>시장·군수·구청장 또는</u> ----- ----- ----- ----- ----- ----- -----해야-----.
1. <u>시·도지사</u> : 영 제1조의2제1호(「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시설	1. <u>시장·군수·구청장</u> : ----- ----- ----- ----- ----- ----- <u>제외한다), 제2호, 제6호 및 제7호</u>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u>시·도지사 및 교육감</u> 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개선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3개월의	② <u>시장·군수·구청장 또는</u> --- ----- ----- ----- ----- ----- -----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를 받은 경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 보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

③ -----

----- 시장
·군수·구청장-----제출해야-----.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확인해야-----.

제11조의2(확인검사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출해야 -----
--.

③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⑥ (생략)

----- 시장 · 군수 · 구
청장 -----.

④ (현행과 같음)

⑤ _____

_____.

1. -----

----- . 증축한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 비치 해야
-----.

2. -----

----- 신축·증축·수선한 경
우로서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별로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확인검사를 받도록 명령(이하 “확인검사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확인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의 4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이행보고서에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증명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기간이 끝나거나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의3(확인검사 이행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해야---.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대해서-

-----.

③ -----

시장·군수·구청장 -----제
출해야-----.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

-----확인해야-----.

<신 설>

제11조의9(판매중지 또는 회수의 권

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판매중지나 회수 권고의 수락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호의11서식의 조치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용품 명칭, 제조·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어린이용품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 이행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조치결과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용품 명칭, 제조·수

<u>제11조의9</u> (생략)	<u>입량, 판매량, 조치량,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u> <u>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u> <u>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u> <u>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u> <u>제11조의10</u> (현행 제11조의9와 같음)
---------------------------	---